공 개

의안번호	제 147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의결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안 제6조의2제8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및 규정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을 추가함.

나.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안 제11조)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50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를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합의 완료(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완료(규제 미포함)

라.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26.3.20. ~ '26.3.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 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8호 중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6호”를 “영 제55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55조제2항제2호”을 “영 제5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

하인 자

제12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생 략)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55조제1항제1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55조제1항제18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2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

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	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3호 ----------.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4